

#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06호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41호(상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42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43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44호(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7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90호(공익사업의 변경 알림 공고) .....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94호(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설명회 공고) ..... 3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99호(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 3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06호(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4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10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 49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355호(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 안내 및 징수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50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357호(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52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93호(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5

회 람									
--------	--	--	--	--	--	--	--	--	--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41호

## 상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이 시행하는 상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08

###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명 : 상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 하리 일원
3. 사업목적 : 노후화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락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영농편의 제공
4. 사업내용(규모)

구 분	총계획	'17년까지	'18년계획	'19년이후
○ 용수지선	L=4.180km	L=1.469km	L=1.967km	L=0.744km
○ 배수간선	L=1.525km	-	L=0.940km	L=0.585km

5. 사업비 : 4,200백만원
6. 사업기간 : 2017년 02월 ~ 2019년 12월(34개월)
7. 사업효과 : 용배수로 현대화로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 및 영농 편의 제공
8.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가.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 나.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전화032-930-2529)
9. 관련서류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42호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도시정비과, 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10. 15.

## 인천광역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207번지 내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14,235.0㎡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18. 10. 15.
- 준공예정일: 2020.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1	계양구 서운동	207	체	249,107.3	14,23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끝.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43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12), 옹진군청 지역개발과(☎899-26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10. 15.

## 인천광역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임.
2. 위 치
  - 소연평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160
  - 소 청 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147
3.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	수도공급설비 (해수담수화시설)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160	-	410m <sup>2</sup>	410m <sup>2</sup>	-	-
신설	2	수도공급설비 (해수담수화시설)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147	-	536m <sup>2</sup>	536m <sup>2</sup>	-	-

##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면적(m <sup>2</sup> )	결정 사유
1	수도공급설비 (해수담수화시설)	• 신설 - 면적: 410m <sup>2</sup>	• 도서민의 안정적인 물 복지 향상
2	수도공급설비 (해수담수화시설)	• 신설 - 면적 : 536m <sup>2</sup>	• 도서민의 안정적인 물 복지 향상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44호

##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282(2016. 11. 14.)호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하고 고시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0. 15.

### 인천광역시장

#### □ 개발계획 수립 (변경)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없음)

○ 명칭: 동춘1 도시개발구역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315-37(동춘동 752-4번지) 일원

○ 면적: 407,913㎡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에 대한 불량·노후주택의 정비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없음)

- 시행자: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동)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 시행기간: 2008. 11. 24. ~ 환지처분일까지(2020. 12. 31.)
- 시행방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m <sup>2</sup> )	구성비(%)	면적(m <sup>2</sup> )	구성비(%)	
계	407,913.0	100.0	407,913.0	100.0	
주 거 용 지	223,261.5	54.7	223,261.5	54.7	
단 독 주 택	51,683.3	12.7	51,683.3	12.7	
공 동 주 택	142,581.6	34.9	142,581.6	34.9	
공 동 주 택	13,441.0	3.3	13,441.0	3.3	이주대책
근 린 생 활 시 설	15,555.6	3.8	15,555.6	3.8	
기 타 시 설	-	-	1,500.0	0.4	노유자시설
도시기반시설용지	184,651.5	45.3	183,151.5	44.9	
도 로	101,157.5	24.8	101,157.5	24.8	보행자도로 5개소 및 환지도로포함
공 원	25,891.0	6.4	25,891.0	6.4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완 충 녹 지	30,233.0	7.4	30,233.0	7.4	완충녹지 7개소
경 관 녹 지	10,702.0	2.6	10,678	2.6	경관녹지 1개소
학 교	10,900.0	2.7	10,900.0	2.7	초등학교 1개소
주 차 장	4,268.0	1.0	3,460	0.8	노외주차장 3개소
공 공 청 사	750.0	0.2	-	-	
문 화 시 설	750.0	0.2	-	-	
저 류 시 설	(2,200)	-	(2,497)	-	지하저류시설 2개소 (완충녹지, 주차장 중복결정)
오 수 펌 프 장	-	-	808	0.2	1개소
가 스 공 급 설 비 시 설	-	-	24	0.0	1개소

7. 인구수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m <sup>2</sup> )	층수	용적률	세대수			인구수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계	212,832.0			3,254	3,293	증) 39	8,300	8,300		
단독주택	51,683.3	3층 이하	120% 이하	173	171	감) 2	442	431	감) 11	
근린생활시설 (12, 27가구)	5,126.1	3층 이하	180% 이하	-	13	증) 13	-	34	증) 34	
공 동 주 택	소 계	156,022.6		3,081	3,109	증) 28	7,858	7,835	감) 23	
1BL (7가구)	소 계	51,647.7	30층 이하	220% 이하	1,023	1,023		2,609	2,578	감) 31
	60~85m <sup>2</sup>				933	933		2,379	2,351	감) 28
	85m <sup>2</sup> 초과				90	90		230	227	감) 3
2BL (10가구)	소 계	60,085.7	30층 이하	220% 이하	1,180	1,180		3,009	2,974	감) 35
	60~85m <sup>2</sup>				1,030	1,030		2,626	2,596	감) 30
	85m <sup>2</sup> 초과				150	150		383	378	감) 5
3BL (9가구)	소 계	30,848.2	평균 층수 18층 이하	220% 이하	597	625	증) 28	1,523	1,575	증) 52
	60~85m <sup>2</sup>				521	625	증) 104	1,329	1,575	증) 246
	85m <sup>2</sup> 초과				76		감) 76	194		감) 194
이주대책 (8가구)	소 계	13,441.0	평균 층수 18층 이하	200% 이하	281	281		717	708	감) 9
	60m <sup>2</sup> 이하				181	181		462	456	감) 6
	60~85m <sup>2</sup>				100	100		255	252	감) 3
세대당 인구	기 정	세대당 인구수 : 2.55인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								
	변 경	세대당 인구수 : 2.52인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								
인구밀도	203인/ha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9.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중2-651호선 구역 외 구간 (변경 없음)

- 위 치: 남측 단독주택지 진입도로(아암로 ~ 사업구역 진입부)
- 시설내역

구분	시설내역	산정기준	금액(백만원)	비고
계			1,684	
공사비		전체 공사비내역에 포함	400	전체 공사비에 포함
토지비	B=15m L=149m A=2,292m <sup>2</sup>	공시지가의 약 2배 적용 - 2008년 1월 1일 기준 - 280,000원×2=560,000	1,284	전체 사업비에 포함

- 설치시기: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설치
- 비용부담: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나. 중2-651호선 ~ 승기하수처리장 연결 오수관로 (신설)

- 위치: 남측 단독주택지 진입도로(중2-651호선)~승기하수처리장
- 시설내역

구분	시설내역	산정기준	금액(백만원)	비고
계			1,300	
공사비	D=300mm L=1,635m	설계내역	1,127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이행사항으로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
		공사 중 부대비용	173	

- 설치시기: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사용승인 이전
- 비용부담: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 032-440-45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63)
-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따로 붙임

### 12. 지형도면: 게재 생략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실시계획(변경) 인가

##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명칭: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에 대한 불량·노후주택의 정비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315-37(동춘동 752-4번지) 일원
- 면적: 407,913㎡

## 4. 시행자 (변경 없음)

- 시행자: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동)

## 5. 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8. 11. 24. ~ 환지처분일까지(2020. 12. 31.)

## 6. 시행방식 (변경 없음)

- 환지방식

##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 따로 붙임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 032-440-45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63)
- 열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 (인가조건: 세부내용 생략)(기 의제 사항 생략)**

- 하수도법 제16조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구역 외 오수관로 설치(중2-651~승기하수종말처리장)
  - D=300mm, L=1,635m

**10.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붙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동춘1 도시개발구역 동춘1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	407,913	-	407,9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12호 (2006.11.27)

## 2)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407,913	-	407,913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606	-	141,606	34.9	
	제2종일반주거지역	52,053	-	52,053	12.7	
	제3종일반주거지역	189,217	-	189,217	46.3	
	준주거지역	25,037	-	25,037	6.1	

##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

## 가) 교통시설 (변경)

## (1) 도로 (변경 없음)

## ○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합계	26	5,642	100,830.8	8	2,195	34,825.0	15	3,271	63,989.8	4	222	2,016.0
광로	1	161	8,901.0	-	-	-	1	161	8,901.0	-	-	-
대로	2	1,254	40,426.0	1	263	6,150.0	1	991	34,276.0	-	-	-
중로	3	1,327	25,519.0	1	656	15,875.0	1	535	7,971.0	1	136	1,673.0
소로	20	2,900	25,984.8	6	1,276	12,800.0	11	1,538	12,841.8	3	86	343.0

주) 도로면적 및 연장은 사업구역내의 면적 및 연장임

○ 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3	50~90	주간선 도로	2,950 (161)	청학동 광3-6	동춘동 광3-5	일반 도로		인고 제1386호 (1988. 9. 23)	
기정	대로	1	9	35~38	주간선 도로	5,025 (263)	광2-8	65호광장	일반 도로		경고 제160호 (1976. 7. 8)	
기정	대로	2	10	30~36	주간선 도로	1,197 (991)	송도고교	능해로	일반 도로		건고 제2706호 (1966. 9. 2)	
기정	중로	1	361	23~26	집산 도로	656 (656)	대1-9	대2-10	일반 도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기정	중로	2	14	15	보조 간선	1,047	대2-14	대1-9	일반 도로		1987.1.18	구역외 도로
기정	중로	2	651	15	집산 도로	684 (535)	광2-3	광3-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00	12	국지 도로	136 (136)	대2-10	중2-65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44	대2-10	중1-361	일반 도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42	소1-1	소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3	10	특수 도로	32	대1-9	소1-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9	소1-2	소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732	중2-651	중2-65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7	대2-10	동춘동 726-2	일반 도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2	5	9	국지 도로	129	중2-651	소1-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52	중2-651	소1-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178	중2-651	소1-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205	중2-651	소1-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231	중2-651	소1-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127	중2-651	소2-1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8	중2-651	소1-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2	9	국지 도로	264	소1-5	소2-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63	소1-5	소2-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60	소1-5	소2-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5	8	특수 도로	11	중1-361	동춘동 산4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	4	특수 도로	32	대1-9	소1-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2	4	특수 도로	21	중1-361	소1-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4	4	특수 도로	33	대2-10	소1-5	보행자 전용도로		"	

주) ( )는 사업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변경)

○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4,268	감) 808	3,460		
기정	1	주차장	동춘동 767번지 일원	1,000	-	1,00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기정	2	주차장	동춘동 715-1번지 일원	963	-	963	"	
변경	3	주차장	동춘동 710-1번지 일원	2,305	감) 808	1,497	"	저류시설2 지하부 중복결정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주차장	◦ 면적 감소 -2,305m <sup>2</sup> → 1,497m <sup>2</sup> 감)808m <sup>2</sup>	◦ 우수중계펌프장 신설에 따른 주차장 면적 감소

나) 공간시설 (변경)

(1) 공원 (변경 없음)

○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25,891	-	25,891		
기정	1	-	근린공원	동춘동 738-10번지 일원	10,157	-	10,15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기정	2	-	근린공원	동춘동 559-33번지 일원	11,275	-	11,275	"	
기정	1	-	어린이공원	동춘동 716-3번지 일원	2,237	-	2,237	"	
기정	2	-	어린이공원	동춘동 713-17번지 일원	2,222	-	2,222	"	

(2) 녹지 (변경)

○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40,935	감)24	40,91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74-6번지 일원	1,896	-	1,89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69-24번지 일원	1,729	-	1,729	"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28-7번지 일원	1,740	-	1,740	"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9-9번지 일원	11,638	-	11,6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저류시설1 지하부 중복결정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8-2번지 일원	1,913	-	1,913	"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7-14번지 일원	3,946	-	3,946	"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6-4번지 일원	7,149	-	7,149	"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0-1번지 일원	222	-	222	"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동춘동 717-29번지 일원	10,702	감) 24	10,678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경관녹지	◦ 면적 감소 -10,702m <sup>2</sup> → 10,678m <sup>2</sup> 감) 24m <sup>2</sup>	◦ 가스공급설비시설 신설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다) 유통공급설비 (신설)

(1) 가스공급설비 (신설)

○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	가스공급설비	동춘동 717-29번지 일원	-	증) 24	24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가스공급설비	◦ 신설 -0m <sup>2</sup> → 24m <sup>2</sup> 증) 24m <sup>2</sup>	◦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공급처리시설 신설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1) 학교 (변경 없음)

○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학 교	초등학교	동춘동 752-3번지 일원	10,900	-	10,90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2) 공공청사 (폐지)

○ 결정(폐지)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1	공공청사	-	동춘동 738-4번지 일원	750	감) 75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청사	°폐지 -750㎡ → 0㎡ 감) 750㎡	°연수구 요청에 의한 폐지 (노유자시설 변경)

(3) 문화시설 (폐지)

○ 결정(폐지)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1	문화시설	-	동춘동 736 번지 일원	750	감) 75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문화시설	°폐지 -750㎡ → 0㎡ 감) 750㎡	°연수구 요청에 의한 폐지 (노유자시설 변경)

마) 방재시설 (변경)

(1) 우수지 (변경)

○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2,200	증) 297	2,497		
기정	1	우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719-9번지 일원	1,000	-	1,00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완충녹지4 지하부 중복결정
변경	2	우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710-1번지 일원	1,200	증) 297	1,49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70호 (2008.11.24)	주차장3 지하부 중복결정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유수지	◦면적변경 -1,200㎡ → 1,497㎡ 증) 297㎡	◦오수중계펌프장 신설에 따른 면적 증가

## 바) 환경기초시설 (신설)

## (1) 하수도 (신설)

## ○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동춘동 710-1번지 일원	-	증) 808	808		

##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오수중계 펌프장	◦신설 -0㎡ → 808㎡ 증) 808㎡	◦공동주택 사업계획(7, 8, 10) 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구 분	최소 획지구모	비 고
단독주택용지	250m <sup>2</sup>	
근린생활시설용지	300m <sup>2</sup>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m)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m)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위 치	면적(m)			
C-1	1	1,243.7	1	905.7		C-1	1	1,243.7	1	905.7			
			2	338.0					2	338.0			
C-1	2	3,510.1	1	410.0		C-1	2	3,510.1	1	410.0			
			2	511.8					2	511.8			
			3	891.2					3	891.2			
			4	891.2					4	891.2			
			5	805.9					5	805.9			
C-1	3	2,293.9	1	403.3		C-1	3	2,293.9	1	403.3			
			2	890.6					2	890.6			
주차장(G)			3	1,000.0		주차장(G)			3	1,000.0			
C-1	4	3,071.0	1	447.9		C-1	4	3,071.0	1	447.9			
			2	687.5					2	687.5			
			3	956.8					3	956.8			
			4	978.8					4	978.8			
C-1	5	504.6	1	504.6		C-1	5	504.6	1	504.6			
C-1	6	1,042.40	1	342.6		C-1	6	1,042.40	1	342.6			
			2	399.8					2	399.8			
			3	300.0					3	300.0			
B-1	7	75,933.7	1	51,647.7		B-1	7	75,933.7	1	51,647.7			
			학교1(D)	2					10,900.0	학교1(D)		2	10,900.0
			문화시설(A)	3					750.0	노유자시설(B)		3	1,500.0
			공공청사(B)	4					750.0				
			근린공원1	5					10,157.0	근린공원1		5	10,157.0
			완충녹지2	6					1,729.0	완충녹지2		6	1,729.0
B-2	8	15,337.0	1	13,441.0		B-2	8	15,337.0	1	13,441.0			
			완충녹지1	2					1,896.0	완충녹지1		2	1,896.0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3	9	30,848.2	1	11,889.9		B-3	9	30,848.2	1	11,889.9	
			2	18,958.3					2	18,958.3	
B-1	10	73,463.7	1	60,085.7	(유수지1 1,000)	B-1	10	73,463.7	1	60,085.7	(유수지1 1,000)
완충녹지4			2	11,638.0		완충녹지4			2	11,638.0	
완충녹지3			3	1,740.0		완충녹지3			3	1,740.0	
<b>경관녹지1</b>	<b>11</b>	<b>10,702.0</b>	<b>1</b>	<b>10,702.0</b>		<b>경관녹지1</b>	<b>11</b>	<b>10,702.0</b>	<b>1</b>	<b>10,678</b>	
						<b>가스공급1</b>			<b>2</b>	<b>240</b>	
C-2	12	5,539.4	1	300.0		C-2	12	5,539.4	1	300.0	
			2	465.8					2	465.8	
			3	386.5					3	386.5	
			4	350.0					4	350.0	
			5	383.6					5	383.6	
			6	343.3					6	343.3	
			7	447.0					7	447.0	
			8	364.0					8	364.0	
			9	350.0					9	350.0	
			-							10	
완충녹지5			11	1,913.0		완충녹지5			11	1,913.0	
A	13	3,793.0	1	532.6		A	13	3,793.0	1	532.6	
			2	311.9					2	311.9	
			3	311.9					3	311.9	
			4	286.2					4	286.2	
			5	286.2					5	286.2	
			6	409.8					6	409.8	
			7	362.4					7	362.4	
			8	504.0					8	504.0	
			9	308.1					9	308.1	
			10	389.4					10	389.4	
			-							11	
완충녹지7					완충녹지7						
A	15	4,167.3	1	406.1		A	15	4,167.3	1	406.1	
			2	395.0					2	395.0	
			3	351.1					3	351.1	
			4	351.1					4	351.1	
			5	455.7					5	455.7	
			6	397.0					6	397.0	
			7	338.3					7	338.3	
			8	373.5					8	373.5	
A	15	4,167.3	9	251.4		A	15	4,167.3	9	251.4	
			10	250.0					10	250.0	
			11	598.1					11	598.1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	16	2,663.4	1	316.8		A	16	2,663.4	1	316.8	
			2	316.8					2	316.8	
			3	316.8					3	316.8	
			4	250.0					4	250.0	
			5	250.0					5	250.0	
			6	250.0					6	250.0	
			7	963.0					7	963.0	
주차장2					주차장2						
아린공원	17	2,237.0	1	2,237.0		아린공원	17	2,237.0	1	2,237.0	
A	18	9,062.3	1	257.3		A	18	9,062.3	1	257.3	
			2	257.2					2	257.2	
			3	419.8					3	419.8	
			4	409.0					4	409.0	
			5	381.4					5	381.4	
			6	360.8					6	360.8	
			7	283.4					7	283.4	
			7-1	283.5					7-1	283.5	
			8	422.8					8	422.8	
			9	380.5					9	380.5	
			10	250.0					10	250.0	
			11	250.0					11	250.0	
			12	260.0					12	260.0	
			13	259.6					13	259.6	
			14	320.0					14	320.0	
			15	321.0					15	321.0	
완충녹지6			16	3,946.0		완충녹지6			16	3,946.0	
A	19	2,831.9	1	398.6		A	19	2,831.9	1	398.6	
			2	250.0					2	250.0	
			3	366.4					3	366.4	
			4	340.0					4	340.0	
			5	370.0					5	370.0	
			6	383.9					6	383.9	
			7	323.4					7	323.4	
			8	399.6					8	399.6	
A	20	2,743.3	1	423.3		A	20	2,743.3	1	423.3	
			2	433.0					2	433.0	
			3	485.8					3	485.8	
			4	310.0					4	310.0	
			5	308.7					5	308.7	
			6	301.6					6	301.6	
			7	480.9					7	480.9	
A	21	3,390.7	1	250.0		A	21	3,390.7	1	250.0	
			2	296.2					2	296.2	
			3	296.2					3	296.2	
			4	296.2					4	296.2	
			5	296.2					5	296.2	
			6	331.5					6	331.5	
			7	304.1					7	304.1	
			8	304.1					8	304.1	
			9	304.1					9	304.1	
			10	356.0					10	356.0	
			11	356.1					11	356.1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	22	3,480.8	1	266.2		A	22	3,480.8	1	266.2	
			2	266.2					2	266.2	
			3	433.7					3	433.7	
			4	323.3					4	323.3	
			5	323.4					5	323.4	
			6	303.3					6	303.3	
			7	385.7					7	385.7	
			8	392.1					8	392.1	
			9	357.8					9	357.8	
			10	429.1					10	429.1	
A	23	4,091.1	1	250.0		A	23	4,091.1	1	250.0	
			2	458.3					2	458.3	
			3	290.0					3	290.0	
			4	290.0					4	290.0	
			5	270.8					5	270.8	
			6	427.4					6	427.4	
			7	424.0					7	424.0	
			8	301.2					8	301.2	
			9	301.2					9	301.2	
			10	250.0					10	250.0	
			11	250.0					11	250.0	
			12	277.1					12	277.1	
			13	301.1					13	301.1	
A	24	3,765.8	1	250.0		A	24	3,765.8	1	250.0	
			2	250.0					2	250.0	
			3	250.0					3	250.0	
			4	252.7					4	252.7	
			5	265.0					5	265.0	
			6	276.1					6	276.1	
어린이공원			7	2,222.0	어린이공원			7	2,222.0		
A	25	4,697.3	1	339.2		A	25	4,697.3	1	339.2	
			2	254.3					2	254.3	
			3	254.3					3	254.3	
			4	254.4					4	254.4	
			5	254.4					5	254.4	
			6	267.6					6	267.6	
			7	287.7					7	287.7	
			8	337.9					8	337.9	
			9	479.3					9	479.3	
			10	332.0					10	332.0	
			11	383.7					11	383.7	
			12	389.8					12	389.8	
			13	362.7					13	362.7	
			14	250.0					14	250.0	
			15	250.0					15	250.0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	30	2,047.0	1	323.2		A	30	2,047.0	1	323.2	
			2	338.8					2	338.8	
			3	368.4					3	368.4	
			4	338.9					4	338.9	
			5	338.8					5	338.8	
			6	338.9					6	338.9	
근린공원2	31	13,802.0	1	11,275.0		근린공원2	31	13,802.0	1	11,275.0	
주차장3			2	2,305.0	(유수지 2,120.0)	주차장3			2	1,497.0	(유수지 1,497)
완충녹지8			3	222.0		완충녹지8			3	222.0	
								4	808.0		

나)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12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획지당 세대수	· 1세대(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 담장 및 대문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색채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선정하고 주로 YR계열, Y계열을 사용하여 안정감 있고 조화롭게 연출	
건 축 선	-			

## (2) 공동주택용지(B-1)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B-1	용 도	허 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폐율	· 7가구 16% 이하 (아파트 13%이하) · 10가구 13% 이하	
		용 적 륜	· 220% 이하	
		높 이	· 30층 이하	
		가구당세대수	· 7가구 1,023세대, 10가구 1,180세대	
		배 치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변 건축물은 소음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제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형 태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타워형 배치를 위주로 하며, 벽식의 타워형 지양 · 저층부는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 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택 ·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건 축 선	· 소로 1-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3) 공동주택용지(B-2)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2	B-2	용 도	허 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평균층수 18층 이하	
		가 구 당 세 대 수	· 8가구 281세대	
		배 치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소음 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제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형 태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가급적 타워형 배치 권장 · 저층부는 가급적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택 ·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건 축 선	-	

## (4) 공동주택용지(B-3)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3	B-3	용 도	허 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률	· 220% 이하	
		높 이	· 평균층수 18층 이하	
		가구당 세대수	기정	· 9가구 597세대
			변경	· 9가구 625세대
		배 치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소음 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제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형 태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가급적 타워형 배치 권장 · 저층부는 가급적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택 ·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건 축 선	-			

## (5) 근린생활시설용지(C-1)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C-1	용 도	허 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종교집회장 내 아동관련시설 허용)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입면부는 문양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미적 기능을 확보하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통일감 있게 처리 ·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와 장애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고 ·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대로 1-9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 2-10호선 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 1-36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6) 근린생활시설용지(C-2) (변경)

## -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2	C-2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제외)</li> <li>·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옥외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li> <li>·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li> <li>· 노유자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li> </ul>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획지당 세대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li> <li>·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li>· 입면부는 문양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미적 기능을 확보하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통일감 있게 처리</li> <li>·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와 장애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고</li> <li>·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li> <li>·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li> </ul>	
		건 축 선	-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2	C-2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b> <b>(단, 2층 이상 건축 시 허용하되 최상층 1개 층에 한해 허용)</b></li> <li>·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제외)</li> <li>·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옥외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li> <li>·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li> <li>· 노유자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li> </ul>
			불 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획지당 세대수	· <b>1세대(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b>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li> <li>·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li>· 입면부는 문양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미적 기능을 확보하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통일감 있게 처리</li> <li>·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와 장애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고</li> <li>·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li> <li>·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li> </ul>
		건 축 선	-

(7) 학교시설용지(D)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	D	용 도	허 용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8) 노유자시설용지(E)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	E	용 도	허 용 · 노유자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9) 공공청사용지(E) (폐지)

(10) 문화시설용지(F) (폐지)

(11) 주차장용지(F)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	G	용 도	허 용	·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제1,2종근린생활 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하며, 2층이상은 주차장용도에 한함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90% 이하	
		용 적 률	· 4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	단독주택 용 지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1획지당 최소 2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	
B-1	공동주택 용 지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 소로 1-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대지내 조 경	· 대로 2-10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 공간 확보	
		공공보행 통 로	· 근린공원1 및 초등학교 북측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4m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B-2	공동주택 용 지 (이주대책)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C-1	근린생활 시설용지	대지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li> <li>·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li> <li>· 대로 1-9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li>· 대로 2-10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li>· 중로 1-36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ul>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C-2	근린생활 시설용지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D E F G	학교용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주차장용지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	단독주택 용 지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1획지당 최소 2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	
B-1	공동주택 용 지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 소로 1-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대지내 조 경	· 대로 2-10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 공간 확보	
		공공보행 통 로	· 근린공원1 및 초등학교 북측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4m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B-2	공동주택 용 지 (이주대책)	대지내 조 경	· 대1-9호선 완충녹지 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 간 확보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B-3	공동주택 용 지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공공보행 통 로	· 공동주택부지 내 획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 획지별로 2m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 (①획지 2m, ②획지 2m)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C-1	근린생활 시설용지	대지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li> <li>·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li> <li>· 대로 1-9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li>· 대로 2-10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li>· 중로 1-36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ul>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C-2	근린생활 시설용지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D E G	학교용지 노유자시설 주차장용지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90호

## 공익사업의 변경 알림 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73호(2010. 12. 13.)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건설 사업에 편입되어 협의취득(또는 수용) 된 토지 중 일부가 변경되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오며, 그 주소·사는 곳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환매권자에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이 공고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10. 15.

## 인천광역시장

### 1. 공익사업의 변경 내역

#### 가. 종전 공익사업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명칭: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건설사업

##### ○ 사업기간: 2010. 12. 13.~2015. 3. 31.

#####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

#### 나. 변경된 공익사업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

##### ○ 사업기간: 2018. 10. 15.~2020. 6. 30.

#####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

##### ○ 실시계획 고시일: 2018. 10. 15.

2. 공고대상: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건설사업 관련 협의 취득(또는 수용) 토지 환매권자(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공익사업의 변경 토지 목록 및 통지 내역

연번	토지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현소유자	직전 소유자	직전 소유자 주소	매매 연도	비고
					당초 지적	공익사업 변경					
1	계양구 서운동	109	14	답	511	45	인천광역시	고*진	충남 태안 태안읍 동문리 413-1 대림@ 7**호	2010년	
2	계양구 서운동	109	16	답	1,793	407	인천광역시	정*희	인천 남구 관교동 13-11호 동부@ 103/12**	2010년	
3	계양구 서운동	109	17	답	82	24	인천광역시	이*원	인천 계양구 서운동 19-**호	2010년	
4	계양구 서운동	109	18	답	5	5	인천광역시	정*희	인천 남구 관교동 13-11호 동부@ 103/12**	2010년	
5	계양구 서운동	109	19	답	1,018	591	인천광역시	차*희	인천 부평구 부평동 442-*호	2010년	
6	계양구 서운동	109	20	답	3,877	1,698	인천광역시	변*임	인천 계양구 작전동 580번지 현대@ 211/13**	2010년	
7	계양구 서운동	109	21	답	4,179	1,343	인천광역시	김*수	인천 계양구 작전동 6**번지	2010년	
8	계양구 서운동	109	22	답	9,012	284	인천광역시	임*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5-*번지	2010년	
9	계양구 서운동	109	70	답	172	172	인천광역시	이*남	인천 계양구 서운동 178-1 경남아너스빌 101/1**	2010년	
10	계양구 서운동	109	71	답	122	122	인천광역시	김*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25번지 우성@ 107/1**	2010년	
11	계양구 서운동	109	73	답	835	835	인천광역시	김*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25번지 우성@ 107/1**	2010년	
12	계양구 서운동	109	74	답	2,689	2,689	인천광역시	고*진	충남 태안 태안읍 동문리 413-1 대림@ 7**호	2010년	
13	계양구 서운동	109	75	답	891	891	인천광역시	정*희	인천 남구 관교동 13-11호 동부@ 103/12**	2010년	
14	계양구 서운동	109	76	답	1,837	1,837	인천광역시	이*용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 211/6**	2010년	
15	계양구 서운동	109	79	답	1,649	1,649	인천광역시	정*희	인천 남구 관교동 13-11호 동부@ 103/12**	2010년	
16	계양구 서운동	109	80	답	1,167	1,167	인천광역시	차*희	인천 부평구 부평동 4**-7호	2010년	
17	계양구 서운동	109	81	답	664	257	인천광역시	차*희	인천 부평구 부평동 4**-7호	2010년	
18	계양구 서운동	109	83	답	219	219	인천광역시	변*임	인천 계양구 작전동 580번지 현대@ 211/13**	2010년	
	계				30,722	14,235					

※ 공익사업 변경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지적 공부정리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소유자 주소는 공부상 주소와 계양경기장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안내 주소입니다.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방법: 시보, 시청·계양구청·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의장소: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연수구 갯벌로 12).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94호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설명회 공고**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18.10.24(수) 15:30~17:30

나. 장 소 : 청라2동 행복복지센터(2층 대회의실)

다. 주요 내용

- (도시철도기본계획안) 도시교통 특성·교통상황, 장래 교통수요 예측, 건설 및 운영계획,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경제성·재무성, 자금조달 방안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본계획의 개요, 기본계획 및 입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기본계획의 적정성 등

라. 주재자 및 발표자 : 인천광역시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지명(6명 내외)

마. 기본계획(안) 의견제출 : '18.10.26.까지 서면(철도과), 전자우편(nsy71@korea.kr) 및 팩스(☎032-440-8710) 제출

※ 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은 '18.10.22.(월)까지 우리 市 홈페이지(교통> 교통자료실)에 게시 예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가. 계 획 명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일원

다. 계획규모 : 연장 10.74km

라. 공람기간 : '18.10.22~11.14

마.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철도과, 서구청 환경보전과, 석남1동·신현원창동·가정1동·청라1~3동행복복지센터

바. 관계서류 : 공람장소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재

사. 의견제출 : '18.11.22.까지 서면(철도과), 전자우편(gunage2@korea.kr) 및 팩스(☎032-440-8710)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제출

**3.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철도과(☎032-440-3912 또는 3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99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

□ 공고기간 : 2018. 10. 10.(수) ~ 2018. 10. 18.(목)

□ 공고내용

가. 참여사업

연번	사업명	규모	추정 감정가액	의뢰부서	선정 수
1	「산곡6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종전, 종후 자산 평가 등	○ 위치: 부평구 산곡동 10 일원 ○ 감정평가대상 - 계획세대수 : 2,706세대, 부대복리시설 등	10,050억원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	2개업자
2	「용현5동 새한 아파트 주택재 건축정비사업」 종후 자산 평가	○ 위치: 미추홀구 용현동 627-80 일원 ○ 감정평가대상 - 계획세대수 252세대, 오피스텔 등	900억원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1개업자
3	「계양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1 차) 수용재결 평가	○ 위치: 계양구 작전동 765 일원 ○ 감정평가대상 - 토지 100필, 지장물 92건	403억원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2개업자
4	「구 중소기업 전시장 부지 공 유 재산」 매각 평가	○ 위치: 연수구 동춘동 926-8 일원 ○ 감정평가대상 - 토지 3필지, 건물 2동	329억원	인천광역시 (재산관리담당관)	2개업자
5	「아시아드 경기장 롯데 시네마」 임대부지 평가	○ 위치: 서구 연희동 826 일원 ○ 감정평가대상 - 면적 23,202.66㎡(전용+공용)	196억원	인천시설공단 (아시아드 경기장사업단)	1개업자

6	「송도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내 산업단지」 매각가격 평가	○ 위치: 연수구 송도동 11-3 일원 ○ 감정평가대상 - 면적 3,652㎡	107억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2개업자
7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수용재결 평가	○ 위치: 계양구 작전동 765 일원 ○ 감정평가대상 - 토지 27필, 지장물 32건	100억원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2개업자

※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참여사업 규모에 대한 변경(취소 등 포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용현5동새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및 「송도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산업단지」는 감정평가 보수의 80%적용(VAT별도).

※ 해당사업 참여제한(기(既)참여 등) 감정평가업자

- 「용현5동새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종후자산 평가 : 『경일』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수용재결 평가 : 『제일』, 『태평양』 『세종』 『에이원』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수용재결 평가 : 『제일』, 『태평양』 『세종』 『에이원』

#### 나. 신청자격

-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 ②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 ③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주·분사무소 포함)
- ④ 소속 감정평가사 수 : 공고일 현재 3인 이상(심사자 포함 자격취득 이후 평가 실무경력 1년 이상 감정평가사)

다. 신청기간 : 2018. 10. 10. ~ 2018. 10. 18.(18:00)

라.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시청 내 IDC건물 1층)

#### 마. 제출서류

-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서식 1)

② 법인등기·인가증(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③ 업무제안서(서식 2)

④ 업무제안서의 수행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의사항)**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계획 작성 시 해당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이름 포함)를 표시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글자, 기호, 표식, 문양 등 일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기재 시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업무실적)** 대상사업 1회 이상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발행한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제출(\*목록은 별도 제출)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 기타 유의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심의 선정(발주부서 개별통지)

나. 책임 감정평가사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함

다. 업무제안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사후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 준용
- 감정평가 수행계획서 및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계획은 구분 하여 각각 2매 이내 구체적 작성

라. 업무제안서 내용 및 제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순위 자가 선정업자로 결정

바. 참여 신청접수(우편물 접수포함)는 2018. 10. 18.(목) 18:00까지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 함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임

아.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아래 발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 509-6902)
- 용현5동새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미추홀구 도시정비과(☎880-4482)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440-3765)
- 구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공유재산매각 : 인천광역시 재산관리담당관(☎440-2702)
- 아시아드주경기장 롯데시네마 : 인천시설공단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454-2023)
- 송도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내 산업단지 :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453-7143)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440-3765)

자.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팀(☎ 032-440-45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 감정평가업자 참여 신청서

 참여 사업 : 감정평가업자 :

구 분	내 용	비 고
감정평가업자		
주 소		
대 표 자		
감정평가사 수		
전 화 / FAX		
설 립 일		
기 타		※ 소유자 추천 등 제외신청 사유 기재

※ 상기 법인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감정평가법인(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2)

## 업 무 제 안 서

□ 참여사업 :

감정평가업자		사무소 소재지	
감정평가사 수 (명)	개인		
	법인	주사무소	
		분사무소	
수행능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li> <li>○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자격취득 이후)</li> <li>○ 평가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및 증빙자료(작성 예시 참조)</li> <li style="padding-left: 20px;">*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대체 가능</li> <li>○ 보험 등 가입여부</li> <li>○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주의, 경고 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여부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징계유무확인서 등)</li> <li>○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등 : 별지 2장 이내로 구체적 작성</li> </ul>		
감정평가 수행계획	○ 참여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평가일정 등 : 별지 2장 이내 구체적 작성		
기타 의견	* <b>소유자 추천 등 제외신청 사유 기재</b>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감정평가법인(인)

※ 본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평가실적 (최근 3년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연번	사 업 명	발주부서	감정평가서 제 출 일	감정평가금액	비 고
총계					
1					
2					
3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평가실적 합계는 상단 총계 란에 반드시 기재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자격취득 이후)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감정평가 실무경력		비 고
				근무기관	기 간(년 월)	
1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 (년 월)	
2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 (년 월)	
3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 (년 월)	
계	평균 실무경력 :    년    월					

※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 평균 실무경력은 \*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1406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5.

## 인 천 광 역 시 장

1.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예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 최초사용연월일 : 2018. 10. 12.
3. 폐기연월일 : 2018. 10. 12.
4.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불임 참고

등록 공인명 및 인영

인천광역시 혁신담당관 분 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혁신담당관 분 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혁신담당관 일 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민관협치담당 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민관협치담당 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민관협치담당 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 영종소방서 운남119 안전센터장인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인천 영종소방서 영종119 안전센터장인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10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 . 10. 12.

## 인천광역시장

변경 등록 사항 : 대표자

구분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주관과
변경 전	2011-0-인천광역시-4호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99, 114호	임경배	○ 인천무형문화재 대금장 보존 및 전통 계승에 관한 사업	문화재과
변경 후	상동	인천광역시 청능대로 124 동아금호아파트 상가동 102호	상동	상동	상동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355호

##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 안내 및 징수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8-167호(2018.4.30.)로 환지처분 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공 고 명: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 안내 및 징수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8. 10. 15. ~ 2018. 10. 29.(15일간)
3.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시보
4. 공고대상

○ 청산금 교부

연 번	청산금교부대상토지			이름	청산금교부액 (원)	주 소	우편물 수령여부	비 고
	동	종전지번	확정지번					
1	오류동	산141	금전청산	이철영	7,926,440	인천 서구 오류동 222	반송	수취인불명
2	오류동	621	금전청산	이종명	29,592,400	인천 서구 왕길동 498	반송	주소불명
3	오류동	산141	금전청산	이상주	1,585,30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044	반송	수취인불명
4	오류동	산141	금전청산	이홍우	7,926,440	인천 서구 오류동 234	반송	폐문부재
5	오류동	473-2	금전청산	이규철	37,132,200	인천 서구 오류동 545	반송	수취인불명
6	오류동	257	오류동1 753-6	반월촌 발전주 민협의회	72,760,50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34 (4통1반)	반송	폐문부재
7	오류동	822-6	금전청산	서재원	7,665,000	인천 서구 오류동 609	반송	주소불명
8	오류동	636-1	금전청산	이용희	3,142,800	인천 서구 오류동 629	반송	주소불명
9	오류동	717-4	금전청산	박면양	3,530,500	인천 서구 오류동 656	반송	주소불명
10	오류동	산141	금전청산	이규황	7,926,440	인천 서구 오류동 247	반송	주소불명

연 번	청산금교부대상토지			이름	청산금교부액 (원)	주 소	우편물 수령여부	비 고
	동	종전지번	확장지번					
11	오류동	산141	금전청산	이종천	7,926,440	인천 서구 오류동 460	반송	주소불명
12	오류동	696-7	금전청산	박찬용	728,94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62 (24통1반)	반송	수취인불명
13	오류동	671-2	금전청산	박광서	37,875,000	인천 서구 오류동 657	반송	주소불명
14	오류동	672-1	오류동1 709-1	황필환	15,198,750	인천 부평구 마장로 121, 308동505호(산곡 동 현대아파트)	반송	폐문부재
15	오류동	산61-1	금전청산	이연수	11,872,8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아 파트 309동 301호 (26통2반)	반송	폐문부재
16	오류동	675-2	금전청산	최정규	104,193,000	경성 부청진동 168	-	주소불명
17	오류동	718-2	금전청산	김정희	61,860,500	경성 낙원동 69	-	주소불명
18	오류동	794-12	금전청산	서관보	113,520,000	-	-	주소불명
19	오류동 왕길동	72666 521-16	금전청산	이은순	296,008,000	-	-	주소불명
20	왕길동	536-12	금전청산	이지수	49,427,000	인천 서구 오류동	-	주소불명
21	체비지	86블럭1 로트	오류동1 734-8	대한예수 교장로회 꿈이있는 교회	1,480,000	인천 서구 청마로167번길 9, 5층(당하동)	반송	폐문부재
22	체비지	88블럭1 로트	왕길동6 95-2	윤재선	2,127,5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60, 6303동 1002호(이의동, 래미안광교아파트)	반송	폐문부재
23	체비지	77블럭5 로트	왕길동6 94-4	만석건설 산업(주)	1,483,300	인천 서구 검단로 441, 케이티 검단지점 3 층(왕길동)	반송	이사

○ 청산금 징수

연 번	청산금징수대상토지			이름	청산금징수액 (원)	주 소	우편물 수령여부	비 고
	동	종전지번	확장지번					
1	오류동	635-1	오류동17 15-2	이충현	2,531,700	인천 서구 검단로540번길 59, 206동 302 호 (마전동,검단2차아파트아파트)	반송	폐문부재
2	오류동	673-8,9, 10	오류동17 08-4	박상준	26,680,500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14, 153 동1203호(연희동,호반베르디움)	반송	폐문부재
3	오류동	524-1	오류동17 12-7	강남기	1,520,000	인천 계양구 당미길 43, 104동 504호 (동 양동,동양동휴먼빌아파트)	반송	폐문부재
4	오류동	348-1	오류동17 59-7	송석민	13,947,940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14길 22-9 (석관동)	반송	수취인부재
5	오류동	348-1	오류동17 59-7	이훈복	8,044,28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6길30, 3동 202호 (성수동1가, 현대골든타운)	반송	수취거절

5. 소멸시효 및 연체료: 청산금 받을 권리 및 징수할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2018.4.30.)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되며, 징수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6개월내 미납시 연체이자(연12~15%)를 가산하여 징수
6. 관련법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청산금), 제68조(청산금), 제68조의2(청산금의 소멸시효), 인천광역시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7. 문 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지역개발팀(032-440-5318)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357호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8.10.15. ~ 2018.10.29.(15일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18년 11월 19일

##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8년 11월 19일

##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1)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인 권 위 시 과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과태료대 경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우편물송달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차량	처분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000622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학로12번길 87 **** (경학동, 경호빌리)	최동	2018.07.29. 09:29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교 고속도로 하부	폭0.47미터 초과(폭 2.97미터)	인천990A3167	300,000	반송(이사불명)	
2	000624	우**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6258-8 **** (서곡동, 현대아파트)	최동	2018.07.31. 12:53	서구 칠리동 칠리대로	총중량21.45톤 초과 (총중량61.45톤)	서울07기7898	1,500,000	반송(수취인불명)	
3	000628	서**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봉항로 ****	최동	2018.08.02. 15:14	중구 신흥동 옥항대로	폭0.49미터 초과(폭 2.99미터)	전북98시1009	300,000	반송(배문부재)	
4	000631	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중 (방학동)	최동	2018.08.03. 16:10	연수구 동춘동 영고개로	폭0.27미터 초과(폭 2.77미터)	97누4969	300,000	반송(배문부재)	
5	000645	이**	경기도 시흥시 경왕신길로**번길 **, (경왕동, 서해아파트)	최동	2018.08.13. 14:50	중구 북성동 웰미로	폭0.25미터 초과(폭 2.75미터)	경기980A6966	300,000	반송(배문부재)	
6	000656	최**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번길 *** (동매동)	최동	2018.08.07. 14:30	남동구 도림동 소재문	축하중1.70톤 초과(3 축하중11.70톤)	인천98B6830	300,000	반송(배문부재)	
7	000659	김**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중 (석남동, 삼성하우즈)	최동	2018.08.07. 09:13	중구 운서동 햇내로	축하중1.95톤 초과(4 축하중11.95톤)	충남94B2393	500,000	반송(배문부재)	
8	000664	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55번길 **** (경서동, 미소이겐가)	최동	2018.08.16. 11:21	미추홀구 도화동 영진로	축하중1.05톤 초과(4 축하중11.05톤)	인천06B2065	500,000	반송(배문부재)	
9	000671	조**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2길 *** (용상 동)	최동	2018.08.20. 14:29	미추홀구 도화동 장고개로	축하중1.15톤 초과(5 축하중11.15톤)	경북980A9263	500,000	반송(배문부재)	
10	000675	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역로 94, *****(노원동, 단풍마을 유인시 아)	최동	2018.08.21. 15:13	계양구 격진동 아나치로	총중량4.50톤 초과 (총중량27.50톤)	경기88A19367	500,000	반송(배문부재)	
11	000683	유**	인천광역시 서구 용두신로 9-7 *****(심곡동, 동원주택)	최동	2018.08.23. 15:07	미추홀구 도화동 송림로	축하중1.85톤 초과(3 축하중11.85톤)	인천060A3850	500,000	반송(배문부재)	
12	000693	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326번길 *****(대말아파트)	최동	2018.08.30. 15:55	동구 송원동 송원로	폭0.28미터 초과(폭 2.78미터)	경기940A2943	300,000	반송(배문부재)	
13	000697	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27, *****(도화동, 동원아파트)	최동	2018.08.31. 09:38	서구 원정동 북정로	폭0.28미터 초과(폭 2.78미터)	서울90B5324	300,000	반송(배문부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93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15.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사유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인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국가보훈관계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별표3 사용료 등 감면기준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범위  
신설(조례 제9조① 관련 별표 3. 7)

**[별표 3]**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6.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노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시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전화 032)440-3832, FAX 032)440-8655

## (4) 제출서식 : 아래서식 또는 임의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 1.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사용료 전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중 무연고 사망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2. 화장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사용료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 · 공헌자로서 국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유공자증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관내주민
50퍼센트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3.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5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로서 국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유공자증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	관내주민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제외

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보상분묘는 제외)

- 가. 화장시설 : 면제
- 나. 봉안시설 : 최초 10년 면제
- 다. 자연장지 : 50퍼센트 감면

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1기만 징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물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7.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3]  <b>사용료 등 감면 기준(제9조제1관련)</b></p> <p>1. 장사시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 금액</th> <th>대 상</th> <th>범 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전액</td> <td>-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td> <td>관내주민 관외주민</td> </tr> <tr> <td>-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td> <td rowspan="2">관내주민</td> </tr> <tr> <td>-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td> </tr> </tbody> </table> <p>※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p> <p>2. 화장시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 금액</th> <th>대 상</th> <th>범 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전액</td> <t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td> <td rowspan="3">관내주민 관외주민</td> </tr> <tr> <td>-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td> </tr> <tr> <td>-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td> </tr> <tr> <td>-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td> <td rowspan="2">관내주민</td> </tr> <tr> <td>-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td> </tr> <tr> <td>50퍼센트</td> <td>-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td> <td>관내주민</td> </tr> </tbody> </table> <p>3.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 금액</th> <th>대 상</th> <th>범 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50퍼센트</td> <t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td> <td rowspan="2">관내주민</td> </tr> <tr> <td>-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td> </tr> <tr> <td>-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td> <td>관내주민 관외주민</td> </tr> </tbody> </table> <p>※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제외</p> <p>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보상분묘는 제외)</p> <p>가. 화장시설 : 면제                  나. 봉안시설 : 30퍼센트 감면                  다. 자연장지 : 50퍼센트 감면</p> <p>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1기만 징수</p> <p>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물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p>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관내주민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50퍼센트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5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p>[별표 3]  <b>사용료 등 감면 기준(제9조제1관련)</b></p> <p>1. 장사시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 금액</th> <th>대 상</th> <th>범 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전액</td> <td>-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td> <td>관내주민 관외주민</td> </tr> <tr> <td>-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td> <td rowspan="2">관내주민</td> </tr> <tr> <td>-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td> </tr> </tbody> </table> <p>※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p> <p>2. 화장시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 금액</th> <th>대 상</th> <th>범 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전액</td> <t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td> <td rowspan="3">관내주민 관외주민</td> </tr> <tr> <td>-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td> </tr> <tr> <td>-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td> </tr> <tr> <td>-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td> <td rowspan="2">관내주민</td> </tr> <tr> <td>-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td> </tr> <tr> <td>50퍼센트</td> <td>-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td> <td>관내주민</td> </tr> </tbody> </table> <p>3.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 금액</th> <th>대 상</th> <th>범 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50퍼센트</td> <t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td> <td rowspan="2">관내주민</td> </tr> <tr> <td>-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td> </tr> <tr> <td>-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td> <td>관내주민 관외주민</td> </tr> </tbody> </table> <p>※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제외</p> <p>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보상분묘는 제외)</p> <p>가. 화장시설 : 면제                  나. 봉안시설 : 30퍼센트 감면                  다. 자연장지 : 50퍼센트 감면</p> <p>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1기만 징수</p> <p>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물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p> <p>7.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p>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관내주민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50퍼센트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5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관내주민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50퍼센트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5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관내주민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50퍼센트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5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취 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의2(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input type="checkbox"/> 국가보훈기본법 - 제3조(정의)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